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안내

- 대 상 :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등록된 소득·재산 기준 만족하는 희귀질환자
- 신청 기간 : 연중 수시 접수
- 문 의 : 보건소 7층 건강증진과 (☎ 02-860-2039)
- 방 법 : 보건소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
- 내 용 *질환별 지원항목 및 기준 상이

① 본인부담금 지원

- 진료비, 만성신장병 요양비, 보조기기 구입비,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② 간병비

- 월 30만원, 지체 또는 뇌병변 등 장애 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 충족 시 지원

③ 특수식이 구입비

- 특수 조제 분유, 저단백 즉석밥, 옥수수 전분

- 신청서식 (②,③,⑤ 부양의무자도 제출)

① 의료비 지원 신청서

④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환자용)

② 소득·재산 신고서

⑤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③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제출서류 (③,⑤ 부양의무자도 제출)

① 최근 3개월이내 발급된 진단서 1부

④ 장애정도 확인 서류 사본 1부(해당자만)

② 환자 통장사본 1부

⑤ 임대차계약서(해당자만)

③ 최근 3개월이내 발급된 가족관계 상세 증명서

※ 부양의무자는 생계 및 거주를 따로 하는 부모님, 자녀를 의미함.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

소득 · 재산기준표 [2024]

(단위: 원)

가구 규모		1인	2인	3인	4인		
환자	소득	소아청소년	2,896,979	4,787,392	6,129,054	7,448,887	
		성인	2,674,134	4,419,131	5,657,588	6,875,896	
	재산		361,127,914	402,974,360	432,673,583	461,889,583	
	상향 소득		3,565,512	5,892,174	7,543,451	9,167,861	
	가구	상향 재산	서울	1,203,759,712	1,343,247,866	1,442,245,276	1,539,631,942
경기			1,013,759,712	1,153,247,866	1,252,245,276	1,349,631,942	
광역시·세종·청원			983,759,712	1,123,247,866	1,222,245,276	1,319,631,942	
기타			743,759,712	883,247,866	982,245,276	1,079,631,942	
부양의무자	소득		4,456,890	7,365,218	9,429,314	11,459,826	
	재산	서울	601,879,856	671,623,933	721,122,638	769,815,971	
		경기	506,879,856	576,623,933	626,122,638	674,815,971	
		광역시·세종·청원	491,879,856	561,623,933	611,122,638	659,815,971	
		기타	371,879,856	441,623,933	491,122,638	539,815,971	
	상향 소득		5,348,268	8,838,262	11,315,177	13,751,791	
	가구	상향 재산	서울	1,444,511,655	1,611,897,439	1,730,694,331	1,847,558,331
			경기	1,216,511,655	1,383,897,439	1,502,694,331	1,619,558,331
			광역시·세종·청원	1,180,511,655	1,347,897,439	1,466,694,331	1,583,558,331
기타			892,511,655	1,059,897,439	1,178,694,331	1,295,558,331	

○ 재산: 일반재산(주택, 토지 등) + 금융재산(적금, 주식, 펀드 등) + 자동차 - 부채

○ 조사 면제 대상자

- 환자 가구 ① 1가구 환자 2명 이상은 소득·재산 상관없이 1인은 지원

② 혈우병 환자 (입원특례자, 항체양성환자, HIV감염자)

③ 의료급여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만 지원 가능)

- 부양의무자: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 대상자, 한부모가족

○ 상향 조정: 혈우병, 고쇄병, 파브리병, 뮤코다당증 환자